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대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회의의 개편(안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 제3항)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종전의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에서 각각 거시금융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경제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연금·노동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시금융회의
4. 경제안보회의
5. 미래경제회의

제3조의3제3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 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1. <u>거시경제회의</u>	1. <u>거시금융회의</u>
2. <u>민생경제회의</u>	2. <u>민생경제회의</u>
3. <u>혁신경제회의</u>	3. <u>혁신경제회의</u>
4. <u>대외경제회의</u>	4. <u>경제안보회의</u>
<u><신 설></u>	5. <u>미래경제회의</u>
5. <u>경제정책회의</u>	6. <u>경제정책회의</u>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회의	7.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u> 에 따른 분야별 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u>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4912